

【 5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6. 19.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폐지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중복 규제하고 있거나 근거없는 조항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등조례 폐지”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군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폐현황

(99.6.15 현재)

시	군	별	조 례 현 황			비 고
			미 정	개 정	폐 지 (계획포함)	
계			7건	2건	22건	
수	원	시			○	
성	남	시			○	
의	정	부			○	
안	양	시	○			
부	천	시	○			
광	명	시			○	
평	택	시	○			
동	두	천			○	
안	산	시			○	
고	양	시			○	
과	천	시			○	
구	리	시			○	
남	양	주			○	
오	사	시			○	
시	홍	시			○	
군	포	시			○	
의	와	시			○	
하	남	시			○	
용	인	시			○	
파	주	시			○	
이	천	시			○	
안	성	시	○			
김	포	시	○			
양	주	군	○			
여	주	군			○	
화	성	군			○	
광	주	군	○			
연	천	군		○		
포	천	군		○		
가	평	군			○	
양	평	군			○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이행상태의 확인등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3·7]

第15條 (簡易汚水淨化槽의 設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서 다음 各號의 1의 營業을 행하는 者에게 그 주방(廚房)·沐浴湯 등에서 발생하는 汚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簡易汚水淨化槽의 設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3·7>

1. 觀光振興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宿泊業 또는 觀光客利用施設業
2. 食品衛生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 또는 調理販賣業
3. 公衆衛生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宿泊業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汚水淨化槽의 設置에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第16條 (公衆化粧室의 設置 및 管理) 市長·郡守·區廳長은 多數人이 通行하거나 모이는 場所에 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化粧室이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衆化粧室을 設置하고 이를 衛生的으로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97·3·7>

第17條 (特定工產品의 사용제한등)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定工產品의 사용으로 인하여 汚水의 水質을 현저히 惡化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당해 工產品의 販賣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7·3·7>

[全文改正 93·12·27]

第3章 糞尿의 처리

第18條 (糞尿處理業務)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糞尿를 收集·運搬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等關聯營業者로 하여금 그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奧地·僻地등 糞尿의 收集·運搬 및 처리가 어려운 地域에 대하여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第1項의 規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1995. 1. 12]
[조례 제1520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양주군·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 3 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양주군·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 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제3편 환경보호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11.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 12.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 13.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휴양·종합휴양 시설
-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 15.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16. 기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장실

제 2 장 시설의 설치기준

제 5 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격은 가로 85센티미터이상, 세로 115센티미터이상(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센티미터이상)일 것
- 3. 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기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지를 부착할 것.

제 6 조(기타시설)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할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시설의 유지·관리

제 7 조(위탁관리)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8 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트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1회이상 도색할 것.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관리 상황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제3편 환경보호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4 장 시설개선명령

제13조(시설 점검)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명령) 군수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청결등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①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유료화장실 승인

제16조(유료화장실 승인)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

제3편 환경보호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설치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전달관리인을 둘 것.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군수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관리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6장 과태료 부과 징수등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부 칙 (1995. 1.12 조례 제15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 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 제2호, 3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8조를 삭제한다.
3. (별표 1)유료변소의 설치기준, (별표 2)유료변소의 유지관리기준, (별지 1호서식)유료변소 승인신청서 및 (별지 2호 서식)유료변소 승인서를 각각 삭제한다.